



제 334 회 임 시 회
제1차 행정안전복지위원회
2022. 08. 25(목)

경상북도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의안번호	25
제안일자	2022. 08. 10.
회부일자	2022. 08. 18.

행정안전복지위원회
전 문 위 원 실

경상북도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안 자 : 이선희 의원 외 11명

2. 제안이유

- 경상북도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도내 스토킹범죄 신고 접수는 ▲ 2018년 51건 ▲2019년 54건 ▲2020년 56건이며, 「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이 시행된 2021년 이후 신고 접수는 ▲ 2021년 483건 ▲2022년 상반기 기준 495건으로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음
- 스토킹범죄는 살인사건 등의 강력 범죄로까지 이어질 수 있어 스토킹범죄 예방의 필요성이 중대한 실정이며, 피해자가 스토킹 피해로부터 조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피해자 보호 및 지원체계의 구축이 절실함
- 본 조례안은 경상북도 내에서 발생하는 스토킹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임

3. 주요내용

- 스토킹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 등을 보호·지원하기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(안 제3조)
-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·시행하도록 규정함(안 제4조)
-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등을 보호·지원하기 위하여 심리상담 및 법률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(안 제5조)
- 효율적인 스토킹범죄 예방과 피해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과의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함(안 제7조)

4. 관련법령

- 「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
-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

5. 관련부서 협의

- 규제심사 : 규제심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(법무혁신담당관)
- 부패영향평가 : 부패유발요인 없음(감사관)

6. 입법예고 결과

- 예고방법 : 경상북도의회 홈페이지 공고
- 예고기간 : 2022.08.18. ~ 08.24.(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22-70호)
- 의견제출 : 없음

7. 검토의견

□ 제안이유

- 전국적으로 스토킹범죄의 발생 빈도가 증가하고 있으며,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등 그 피해의 심각성이 커지고 있음
- 이에 경상북도 내 스토킹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체계 구축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안됨

□ 주요내용

- 본 조례안은 경상북도의 스토킹범죄의 예방과 피해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
- 안 제2조는 조례에서 사용되는 ‘스토킹범죄’ 등에 관하여 정의함
 - 「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따라 용어를 정의하여 정책 추진에 혼선이 없도록 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됨
- 안 제3조는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 시책을 수립·시행하도록 경상북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
 -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 시책 추진의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됨
- 안 제5조는 도지사가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등의 보호·지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

- 「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에서는 스톱킹범죄 피해자등에 대한 응급조치를 제외한 지속적 피해지원을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음
- 이에 도지사가 스톱킹범죄 피해자등에 대한 지원 정책을 추진 할 수 있도록 조례로 규정하여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됨

○ 안 제8조는 본 조례안에 따른 스톱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 관련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는 사람에 대하여 비밀누설 금지 의무를 규정함

- ‘경상북도 법무혁신담당관 법제팀’에서는 해당 조항이 「형법」 및 「개인정보보호법」에 따라 당연히 되는 사항으로 불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함
- 그러나 「형법」 제127조1), 제317조2)는 공무원, 공무원이었던 자, 의사, 한의사, 치과의사, 약제사, 약종상, 조산사, 변호사, 변리사, 공인회계사, 공증인, 대서업자나 그 직무상 보조자 또는 차등의 직에 있었던 자, 종교의 직에 있는 자 또는 있었던 자에 한하여 적용됨

1) 제127조(공무상 비밀의 누설)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.

2) 제317조(업무상비밀누설) ① 의사, 한의사, 치과의사, 약제사, 약종상, 조산사, 변호사, 변리사, 공인회계사, 공증인, 대서업자나 그 직무상 보조자 또는 차등의 직에 있던 자가 그 직무처리중 지득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,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 <개정 1995. 12. 29., 1997. 12. 13.>

② 종교의 직에 있는 자 또는 있던 자가 그 직무상 지득한 사람의 비밀을 누설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.

- 본 조례안 제5조에 따르면 사업을 위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러한 경우 「형법」에 적용받지 않는 자가 업무를 수행하게 되어 직무상 비밀 누설이 발생하더라도 「형법」으로는 그 책임을 물을 수 없게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
- 또한 「개인정보보호법」은 같은 법 제2조제1호3)의 ‘개인정보’에 한하여 적용됨에 따라, 안 제8조가 없을 경우 개인정보가 아닌 직무상 비밀은 보호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 할 수 있음
- 따라서, 안 제8조는 직무상 비밀 누설로 인해 2차 가해(피해)와 같은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여 피해자들이 다시 고통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됨

□ 종합의견

- 올해 경찰청이 발간한 ‘2021 사회적 약자 보호 치안백서’에 따르면 ‘21년 10월 「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 시행 후 5개월 만에 검거건수가 5,248건에 이를 정도로 스톱킹범죄가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으며, 많은 피해자들이 고통 받고 있음

3) 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<개정 2014. 3. 24., 2020. 2. 4.>

1. “개인정보”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.
 - 가. 성명,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
 - 나.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. 이 경우 쉽게 결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다른 정보의 입수 가능성 등 개인을 알아보는 데 소요되는 시간, 비용, 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.
 - 다. 가목 또는 나목을 제1호의2에 따라 가명처리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·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(이하 “가명정보”라 한다)

- 「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의 시행으로 스톱킹범죄자에 대한 처벌은 강화 되었지만 「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이 계류되면서 피해자에 대한 보호·지원은 여전히 사각 지대에 놓여 있음
- 따라서, 본 조례의 제정은 경상북도가 스톱킹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등을 효율적으로 보호·지원 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됨
- 본 조례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바, 그 제정의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하고 있어 조례 제정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사료됨

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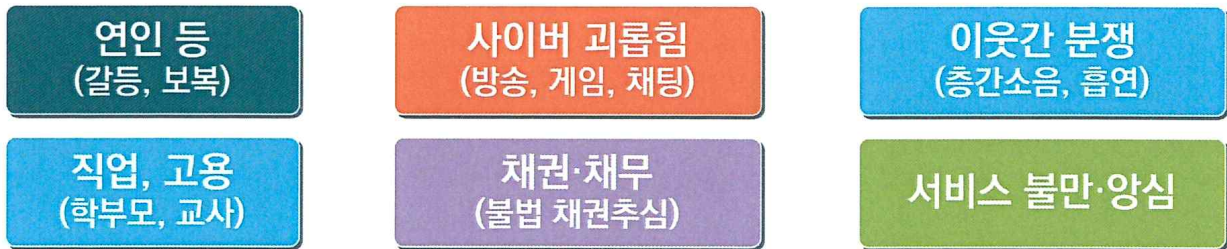
구분	주요 내용
스토킹행위 (제2조제1호)	‘스토킹행위’란 상대방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,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 가.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나.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다. 우편·전화·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등(물건, 글, 그림, 음향, 영상 등)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라.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놓는 행위 마.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
스토킹범죄 (제2조제2호)	‘스토킹범죄’란 <u>지속적 또는 반복적</u> 으로 스톱킹 행위를 하는 것
응급조치 (제3조)	1. 스톱킹행위 제지·중단 통보 및 지속적·반복적으로 할 경우 처벌 경고 2. 스톱킹행위자와 피해자등의 분리 및 범죄수사 3. 피해자등에 대한 긴급응급조치 및 잠정조치 요청 절차 안내 4.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 로의 피해자등 인도(피해자등이 동의한 경우만 해당)
긴급응급조치 (제4조)	1. 스톱킹행위의 상대방이나 그 주거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2. 스톱킹행위의 상대방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☞ 절차 : 경찰→검사→법원 (사후) / 기간 : 1개월 이내(연장 불가)
잠정조치 (제9조) ※ 사법경찰관 신청 또는 검사 직권	1. 피해자에 대한 스톱킹범죄 중단에 관한 서면 경고 2. 피해자나 그 주거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3. 피해자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4. 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 ☞ 절차 : 경찰→검사→법원 (사전) / 기간 : 2·3회 2개월 이내(2회에 한하여 각 2개월의 범위 연장 가능 → 최장 6개월), 4회 1개월 이내
스토킹범죄 피해자 전담조사제 (제17조)	△ 경찰관서의 장은 스톱킹범죄 전담 사법경찰관을 지정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전담 사법경찰관이 피해자를 조사하도록 조치 △ 경찰관서의 장은 전담 사법경찰관에게 스톱킹범죄의 수사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수사 방법 및 절차,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교육 실시
벌칙 (제18조 / 제20조 / 제21조)	△ 스토킹범죄 시 : 3년↓징역, 3천만원↓벌금 △ 홍기, 위험한물건 등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톱킹범죄 시 : 5년↓징역, 5천만원↓벌금 △ 잠정조치 불이행 시 : 2년↓징역, 2천만원↓벌금 △ 긴급응급조치 불이행 시 : 1천만원 이하 과태료

* 자료 : 「2021사회적 약자 보호 치안백서」, 경찰청(2022.06.)

붙임2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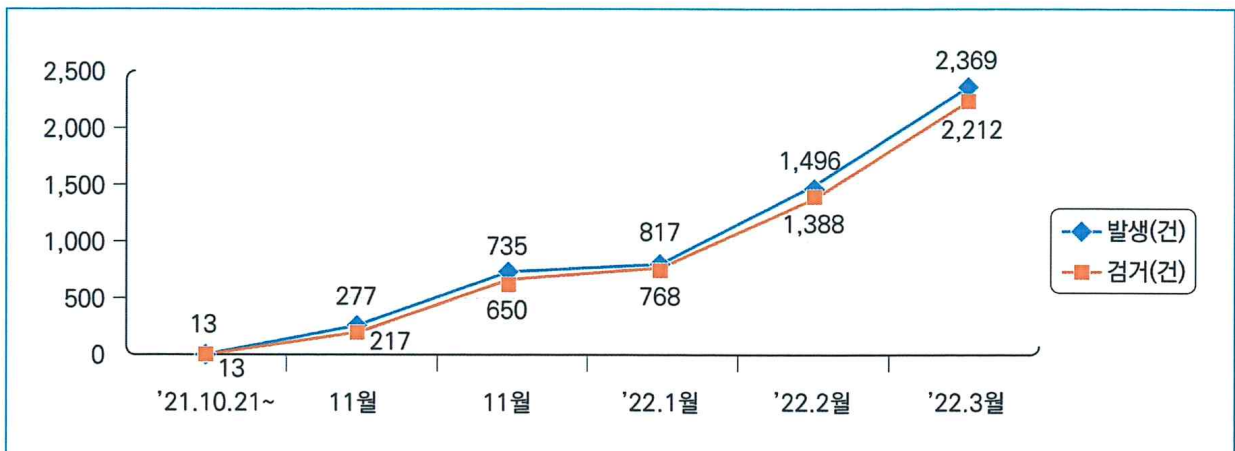
스토킹범죄 현황

□ 현행법상 스톱킹 유형



* 자료 : 「2021사회적 약자 보호 치안백서」, 경찰청(2022.06.)

□ 스톱킹처벌법 시행 후 스톱킹 범죄 발생 현황



* 자료 : 「2021사회적 약자 보호 치안백서」, 경찰청(2022.06.)

□ 피해자간 관계 유형(관계 불상 제외)

	면식 관계						면식 없음
	연 인	가 족	이 웃	지 인	직장관계	거래관계	
비 율	20.9%	3.4%	4.1%	11.4%	1.0%	0.2%	59.0%

* 자료 : 「2021사회적 약자 보호 치안백서」, 경찰청(2022.06.)